

명성이 확보된다고 보며, 이런 식의 개정은 행자부의 자리 지키기 또는 영역 확보라는 동물적 사고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됨.

- 경영평가 및 진단도 행자부 산하의 한국자치경영평가원과 전국지방공사 의료원 연합회에서 하는 등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가 어렵다고 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적위원 13명, 출석위원 11명, 전원일치)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본문중 “15,931명”을 “15,883명”으로 하고, 동조 제2호중 “5,064명”을 “5,016명”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15,818명”을 “15,883명”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10,256명”을 “10,285명”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4,980명”을 “5,016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이 조례에 의하여 개정되는 지방공무원정원중 5명(주·정차위반 단속업무 수행 인력)은 2003년 7월 31일까지, 22명(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지원인력 7명,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 정원 15명)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0 (第138回-第4次)

별표 주관국란 중 “여성정책관(여성정책담당관)”을 “여성정책관(가정복지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산업경제국(산업정책과)의 사무명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산업경제국 (산업정책과)	5.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에너지관리대상자의 에너지 사용량 신고에 관한 사항 나.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의 등록말소 또는 시공업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요청 다. 에너지관리 대상자, 검사 대상기기 설치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 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1)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제1항·제58조 제7항 또는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자 (2)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제1항·제2항 • 동법 제56조 • 동법 제89조제1항 • 동법 제100조제2항 제9호·제13호	구청장

별표 산업경제국(농수산유통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령	수임기관
산업경제국 (농수산유통과)	1.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 축산법 제11조	구청장
	2. 사료제조업 중 단미사료제조업의 등록 및 변경 신고에 관한 사항	· 사료관리법 제8조	구청장
	3. 동물용 의약품도매상허가 및 변경허가	· 약사법 제35조제2항 · 3항	구청장
	4. 수의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공수의사의 위촉 나. 수의사에 대한 보고의 정구 및 업무감독	· 수의사법 제21조 · 동법 제31조	구청장
	5. 가축전염병 방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소독 등의 실시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나. 감염가축 등의 격리 · 억류와 이동제한 · 교통차단 · 출입통제 등의 조치명령 다. 가축의 소유자 등에 대한 가축사육 시설의 폐쇄명령 및 가축사육 제한명령 라. 폐쇄명령 및 사육제한 명령 미이행자의 가축사육시설 폐쇄에 관한 사항 마. 가축운송업자에 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조제3항 · 동법 제8조제1항 · 동법 제8조제2항 · 동법 제8조제3항 · 동법 제8조제6항	구청장
	6. 농약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 나. 영업의 정지 · 등록의 취소 다. 등록증 재교부	·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 동법 제7조제2항 · 동법시행규칙 제10조	구청장
	7. 방제비용 부담명령서 교부	· 식물방역법시행령 제16조	구청장
	8. 축산물가공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허가 나. 품목제조보고에 관한 사항 다. 영업의 승계신고에 관한 사항 라. 허가의 취소 마. 과정금 처분 바. 감독 1) 생산설적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2) 압류 · 폐기 또는 회수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 · 동법 제25조 · 동법 제26조 · 동법 제27조 · 동법 제28조 · 동법 제34조 · 동법 제36조	구청장

별표 주관국란중 “교통관리실(교통운영개선기획단)”을 “교통관리실(도심교통개선반)”으로 한다.
 별표 건설국(치수과)의 사무명란 제1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령	수임 기관
건설국 (치수과)	마.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한강을 제외한 국가 하천 포함)	· 하천법 제28조	구청장

별표 주관국란중 “주택국(주택재개발과)”를 “주택국(재개발과)”로 하고, 주택국(재개발과)란 다음에 주택국(건축지도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령	수임 기관
주택국 (건축지도과)	1.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대한 운행 정지명령 나. 승강기 운행정지명령 다. 검사 라. 과태료 부과 · 징수(다만, 승강기제조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8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한다.)	· 승강기제조및관리 에 관한법률 제10조 의2제4항 · 동법 제18조제2항 · 동법 제21조제1항 제4호 · 동법 제28조	구청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94
------	----

2002. 12.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년 11월 22일, 한봉수의원 외 11인

나. 회부일자 : 2002년 11월 22일

다. 상정일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138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02년 12월 27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한봉수의원)

가. 제안이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시내공원에 소재한 애국지사 기념관, 전시관 등이 운영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주차장 등 인접한 관련 시설을 함께 위탁함으로써 관리 ·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나. 주요골자

- 애국지사 기념관, 전시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7조제1항제3호의 “애국지사 기념관을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를 “애국지사의 기념관과 그 관련 시설을 기부채납한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로 개정하고 “(수입이 적어 운영이 적자인 시설에 한한다)”를 삭제하도록 함.